

예산총칙

2021년도 추경 1 회

제 1 조 2021년도 세입·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:천원)

구 분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533,378,785	16,001,364
일반회계	501,342,167	15,040,265
특별회계	32,036,618	961,099
기타특별회계	32,036,618	961,099
상수도사업	3,384,883	101,546
하수도사업	4,620,701	138,621
행복주택사업	4,334,104	130,023
수질개선	8,243,722	247,312
자활 및 생활안정기금	566,955	17,009
의료급여기금	688,377	20,651
소득특화사업	6,000,000	180,000
농공단지조성사업	3,573,056	107,192
공영개발사업	518,520	15,556
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발전사업	106,300	3,189

제 2 조 세입·세출 예산의 명세는 붙임 "세입·세출 예산"과 같다.

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14,089,731천원으로 한다.

제 4 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29,900,000천원으로 한다.

제 5 조 다음경비에 부족액이 생겼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상호 이용할 수 있다.

- 1.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
- 2. 재해대책 및 복구비